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동보조기구 이용자 노선버스 탑승 거부 금지 〉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71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71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이동보조기구 이용자 노선버스 탑승 거부 금지(안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 신설)	3
※ 참고자료	17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221757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18.
3. 회 부 일 : 2026. 3.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 설비가 완비된 저상버스에서조차, 승하차로 인한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해당 설비의 사용을 기피하거나 탑승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등의 기구·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14조제

1항제4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이동보조기구 이용자 노선버스 탑승 거부 금지(안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약자¹⁾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또는 그 밖의 보행 및 이동을 돕기 위한 기구·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노선버스에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²⁾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교통약자가 휠체어·유모차·보행보조기 또는 그 밖의 보행 및 이동을 돕기 위한 기구·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u>

현행	개정안
② ~ ⑧ (생략) 제3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③·④ (생략)	<u>한하지 아니할 것</u>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u>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제한한 자</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이에 해당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 3. (생략)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

「교통약자법」 제17조³⁾,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⁴⁾ 및 별표 1의4에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승·하차 지원(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나 높이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제공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것)과 좌석안내 등의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다만, 해당 탑승보조 서비스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생략)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① ~ ③ (생략)

④ 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탑승보조 서비스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탑승보조 서비스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교통사업자별 제공 탑승보조 서비스

1. 교통수단

서비스 교통사업자	발권지원 (탑승수속)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	승·하차 지원	좌석안내	교통수단 내 편의시설 이용 및 이 동 지원	출·입국 수속 지원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	○		
시외버스			○	○		

비고

1. (생략)

2. "승하차 지원"이란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나 높이의 차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제공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5)에서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교통수단 접근·이용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반입·사용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6)에서는 교통약자 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정지·취소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능함⁷⁾.

이처럼 현행 여러 법령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 제공의무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일반적인 승차거부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노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별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별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2. (생략)

3.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제26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 8. (생략)

②·③ (생략)

제94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4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생략)

선버스 탑승 거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노선버스 탑승 거부와 관련한 진정은 총 15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관련 운송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남.(참고1. 참조)

이에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휠체어, 유모차, 이동보조기구 등을 이용하여거나 휴대하여 노선버스에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법」 제3조⁸⁾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등 모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탑승 거부·제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구의 실제 탑승 가능 여부는 차량의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구조와 승강설비, 정류장의 시설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4년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시내버스 44.4%, 농어촌버스 9.2%, 마을버스 24.2%이고, 시외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지 않음.

< 노선버스 종류별 저상버스 도입률(2024) >

구분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총대수	저상버스 대수	저상버스 비율	총대수	저상버스 대수	저상버스 비율	총대수	저상버스 대수	저상버스 비율
전국	35,432	15,743	44.4%	2,092	192	9.2%	5,237	1,266	24.2%

※ 현재 시외버스는 저상버스 도입실적이 없음

자료 : 국토교통부

따라서, 저상버스가 아니거나 정류장 높이가 높은 장소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탑승이 곤란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도 모든 탑승 거부·제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차량 구조상 탑승이 불가능한 경우나 승객 과밀 등으로 안전한 탑승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이동보조기구의 안전한 고정이 불가능하여 사고 위험이 현저한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노선버스업계에서도 차내 혼잡으로 인한 공간 부족, 휠체어·유모차 등의 고정시설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민원 및 행정집행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음.

둘째,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이미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정지·취소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⁹⁾.

이에 비하여 개정안은 이동보조기구 등을 이용·휴대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승차 거부·제한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의무주체를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일반적인 승차거부 금지규정과 달리 교통약자의 이동보조기구 이용·휴대에 따른 탑승 거부·제한을 별도로 규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두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음.

이에 양 법률상 의무주체 및 제재대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개정안과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승차거부 금지규정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집행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9) 각주 6), 7) 참조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을 제한·배제·거부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반입·사용을 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고¹⁰⁾, 이러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¹¹⁾, ‘악의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차별의 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승차거부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이에 반해 개정안은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도 포함되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악의성’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제한한 행위 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다른 차이점이 있음.

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④ (생략)

그러나,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노선버스에 탑승하려는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가 양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형벌은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판시한 바 있음¹²⁾.

법무부에서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벌칙과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가 병과될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형벌이 일부 병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중 처벌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 제재의 목적과 성격, 각각의 성립요건 및 중복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은 탑승 거부·제한 금지의무의 주체 및 과태료 부과대상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12)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특히 행정형벌)과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반면 실제 운행과정에서 승객의 탑승 여부를 판단하고 휠체어 승강설비 등을 조작하는 주체는 운수종사자이며,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승차거부 금지의무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운송사업자를 직접적인 의무 및 제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관리·감독 책임과 연계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정당한 사유의 경계가 모호한 현장 상황에서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또한, 버스 운전자가 고의성이 없고, 현장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 등 감안 시에도 운수종사자에게 과도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음.

2) 법무부

교통약자가 이동 보조수단을 이용한 노선버스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과잉금지원칙 원칙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반입 및 사용의 거부를 차별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이 이동 보조수단을 이용하여 노선버스에 탑승하려는 것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개정안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는데,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완전히 배치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하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3)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동권 보장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 여건을 무시한 일률적 의무 부과 및 규제는 실효성이 부족함.

출퇴근 시간대 차내 혼잡으로 인한 물리적 공간 부족 및 휠체어·유모

차 미고정 시 발생할 승객 간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 가중되는데, 현행 버스 구조상 다양한 형태의 유모차·보행보조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 고정장치 등 하드웨어적 선결 과제가 산재해 있음.

제동장치가 미비한 기구의 탑승 강제 시 전도 사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 및 운수종사자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됨.

‘정당한 사유’의 기준 모호로 인한 주관적 판단 개입 및 민원 발생, 행정 집행 과정의 형평성 논란 등이 우려됨.

결론적으로 처벌 규정 도입에 앞서 특별교통수단 증대 및 모호한 기준 정립, 하드웨어적 선결 과제 해결 등이 선행되어야 함.

4)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고속버스의 경우 전동휠체어의 버스탑승이 불가능함.

개정안과 같이 전동휠체어 탑승가능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탑승 요구에 따라 거부한다면 이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거부 한 것인지 주관적인 판단으로 지속 민원 발생 및 행정집행 과정 또한 논란이 지속 발생할 수 밖에 없음.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부담이나 비용은 고속버스 운송사업자(민간사

업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휠체어탑 승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운영손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선행조치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84

참고1

국가인권위원회 휠체어 이용 장애인 노선버스 탑승 거부 진정 사례

□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2015.1~2026.4.)

연 번	사건번호	사건명	의결결과
1	15-진정-0472000	교통수단이용 시 장애인 탑승거부	합의종결
2	15-진정-0546800	저상버스 장애인 탑승 거부	각하(진정취하), 조사중해결
3	18-진정-0161100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시내버스 탑승거부	구제조치 권고
4	18-진정-0754700	저상버스 기사의 장애인 탑승 거부	각하(진정취하)
5	19-진정-0049100	저상버스 기사의 휠체어 장애인 승차 거부	기각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6	22-진정-0550000	저상버스 운전자의 휠체어 장애인 탑승 거부	각하(진정취하)
7	22-진정-0745300	저상버스 기사의 장애인 탑승 거부	구제조치 권고
8	23-진정-0333700	저상버스의 전동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탑승 거부	구제조치 권고
9	25-진정-0025800	마을버스의 휠체어장애인 탑승 거부	각하(진정취하)
10	25-진정-0456000	버스기사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탑승 거부	각하(진정취하)
11	25-진정-0412900	저상버스 장애인 승차 거부	각하(진정취하)
12	25-진정-0544000	버스기사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한 탑승 거부 발언	기각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3	25-진정-0672000	시내버스의 장애인 승차 거부	각하(진정취하)
14	26-진정-0411200	버스기사의 장애인에 대한 승차 거부 등 차별행위	조사중
15	26-진정-0411100	버스기사의 장애인에 대한 승차 거부 등 차별행위	조사중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사건-교통수단 중 버스 탑승 거부 사건에서 '휠체어' 관련으로 추
출함.

□ 권고 결정례

연 번	사건번호	진정요지	권고 내용
1	18-진정-0161100	진정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저상 시내 버스에 탑승하고자 운전기사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요청하였으나 거부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 · 여객운수 대표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를 취할 것 -소속 운전자들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행위 및 정류소 무정차통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편의 제공에 대한 교육과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2	22-진정-0745300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저상 시내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려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지 버스 기사에게 물었으나 버스기사는 고개를 갇고 출발하여 탑승을 거부	· 시장에게,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사례를 전파하고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행위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유사 사건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 · 여객운수 대표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차를 위한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방법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3	23-진정-0333700	버스기사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진정인을 보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대중교통 이용을 거부	· 시장에게, 관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저상버스 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제공’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감독할 것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사례를 전파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